

【10】 양주군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4. 11. .

제출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지방자치의 본격화에 대비한 기준금액 상향조정

주요골자

- 물품매입등의 요구시 기존내용중 단서조항삭제(안 제8조)
-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 기준금액을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500만원에서 단가 1,000만원으로 상향조정(안 제17조)
- 물품출납원의 정리및비치 장부중 소모품대장 삭제(안 제24조)
- 비품의 기준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
(안 별표1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물품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8 조(물품매입등의요구)증 단서조항을 삭제한다.

제 17 조(불용품의매각) 제4항증“500만원”을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 24 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증 “소모품대장”을 삭제한다

【별표1】 물품의 품종·상태구분의 품종 구분 기준증 (1)비품의 ②증 “5만원”을
“1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(1) 비 품 - ①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 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 도 취득단가가 <u>5만원</u> 이상의 물품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 정한 물품	(1) 비 품 - ①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<u>10만원</u> ----- ③ ----- -----
(2) 소모품(생 략)	(2) 소모품 (현행과 같음)
0 물품상태 분류기준(생 략)	0 물품상태 분류기준(현행과 같음)